

	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	규정번호	3-5-24
		운영부서	취창업처 창업팀

제2차/개정 2020.7.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한대학교 재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의 창업실습 등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7.29.>

제2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신한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의 “창업대체학점제”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창업실습”이란 학생이 창업동아리를 대학에 등록한 후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창업현장실습”이란 학생이 창업한 후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창업대체학점제”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활동이 소정의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대체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(개설 및 편성) ① 대학은 학생의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(이하 “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”이라 한다)을 매 학년도 개설했다.

②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의 교과구분, 학점, 성적평가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.

교과목	교과구분	학점	시간	성적평가방법	개설학기
창업실습 I	전공선택	3학점	15주 120시간 이상	P/F	1학기
	일반선택	3학점			
창업실습 II	전공선택	3학점	15주 120시간 이상	P/F	2학기
	일반선택	3학점			
창업현장실습	전공선택	15학점	15주 600시간 이상	P/F	1,2학기

제5조(자격요건) 학생이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29.>

1. 직전 학기 총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자(3.0 미만인 경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)

2. 신청 학기 이전 창업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자
3. 창업실습 교과목 : 2학기 이상 등록하고,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7명 이상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여야 함
4.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: 6학기 이상 등록하고, 대표(공동대표 포함)로 사업자등록을 하며, 대학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선임하여 전공과 관련된 창업활동을 하여야 함

제6조(수강신청 및 선발) ① 학생이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을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취창업처 창업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29.>

1. 창업실습 교과목

- 가. 창업실습 신청서[별표1]
- 나. 성적증명서(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)
- 다. 수강신청 확인서(해당 학기)
- 라. 지도교수 승낙서[별표12]

2. 창업현장실습 교과목

- 가. 창업현장실습 신청서[별표5]
- 나. 사업자등록증
- 다. 창업현장실습 사업계획서 [별표6]
- 라. 성적증명서(창업교과목 이수 증명용)
- 마. 수강신청 확인서(해당 학기)
- 바. 지도교수 승낙서[별표12]

② 취창업처장(창업팀)은 제1항의 신청서류 검토·확인 후 수강학생을 선발하여 교무처장(학사팀)에게 수강신청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29.>

제7조(대체학점 인정) ① 총장은 학생이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 등 평가와 창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7.29.>

- ②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은 단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며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③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.

제8조(인정기준) 학생이 창업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창업실습 교과목

- 가. 창업실습 주차별 활동 일지[별표2]
- 나. 창업실습 중간/기말 활동보고서[별표3]
- 다. 창업실습 결과보고서[별표4]
- 라. 지도교수 평가서[별표10]
- 마. 시제품, 대·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
- 바. 지도교수의 4회 이상 지도실적

2. 창업현장실습 교과목

- 가. 창업현장실습주차별 활동 일지[별표7]
- 나. 창업현장실습 중간/기말 활동보고서[별표8]
- 다. 창업현장실습 결과보고서[별표9]
- 라. 지도교수 평가서[별표10]
- 마. 판매제품, 대·내외 입상 실적 등 창업현장실습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
- 바. 지도교수의 4회 이상 지도실적

제9조(학점인정방법) ① 총장은 창업실습 교과목 수강학생에게 동아리지도교수 평가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한다.

② 총장은 창업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학생에게 대학 전임교원 또는 평생지도교수 평가 60 점 이상 취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을 부여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의 성적은 “P” (Pass)로 표시하여 졸업학점에 포함된다. 다만,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된다.

④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을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수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.

- 1.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집회에 참석한 때
- 2. 질병검사, 징·소집에 응한 때(현역 복무기간은 제외함)
- 3.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창업활동이 어려울 때
- 4.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창업활동이 어려울 때
- 5. 그 밖에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의 수행이 어려울 때

⑤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의 이수를 포기한 때에는 성적을 “F” (Fail)로 처리한다.

제10조(학점취득) 학생은 창업실습 교과목의 경우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, 창업현장 실습 교과목의 경우 최대 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수포기) ① 학생은 수강포기 및 정정, 폐업, 휴학,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창업대체학점 인정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업실습 포기 신청서[별표11]를 지체 없이 취창업처 창업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7.29.>

② 제1항의 포기에 따른 학사 관련 및 등록금 반환 등에 대해서는 「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「등록금 운영 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위임사항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<개정 2020.7.29.>

[제목개정 2020.7.29.]

부 칙 <2019.3.7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7.29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.